

(提)(言)

產業災害補償 및 援護對象者雇傭問題

宋 泰 憲

1. 產災保險 및 援護對象者 雇傭命令의 意義

產業災害補償은 勤勞者の業務遂行中 그業務遂行에 起因하여 發生한 各種 事故로 因한 死亡·負傷·疾病·廢疾 等 各種 公死傷及 災害에 對한 事後 救濟를 為한 것이며 產災保險은 이와 같은 災害發生에 對하여 其 事後救濟에 萬全을 期하고자 勤勞者를 使用하는 使用主로 하여 금一定率의 金額을 積立토록 하여 補償에 對備하하는 一種의 保險이다. 產業革命以後 機械工業化의 發展과 함께 如斯한 災害發生이 增大되 反面 「와이말」憲法以後 自由 民主主義의 基本秩序속에서 人間의 基本權의 하나인 勤勞者の 生存權이 重要視되어 왔다.

그리하여 勤勞者保護를 為한 社會保障制度의 特殊한 一形態로서 使用者無過失責任主義에 立脚하여 國家가 強制 내지 調整을 하여 使用者에 對하여 責任保險制度로 規制하게 된 것이다.

한편 援護對象者の 雇傭命令은 二次大戰後 主로 美國에서 強力히 推進되어 制度化한 것으로서 國家에 對하여 공헌하고 순직, 戰死, 負傷한當事者 또는 그 直系家族은 資本主義 競爭社會 속에서 他人들과 同等條件의 競爭力を 國家를 為하여喪失하였음으로 이들에 對한 就業機會를

制度의으로 規制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다.

現在 우리 나라는 第1次 및 第2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의 成功的 遂行으로 急速한 產業(機械工學)의 發展을 이루한 反面 光復과 反共戰線에서 또는 越南戰線等에서 自由 守護를 為하여 大量의 犀牲을 치른바 있다. 이와 같은 社會條件 속에서 위에서 말한 兩者가 社會問題로 그 意義가 크다 하겠으며 이에 現在 우리 社會에서 이 兩者가 과연 合理的으로 規制되고 있는가 考察코자 한다.

2. 產業災害保險에 對한 問題點 及 提言

우리 나라의 產災保險은 그 歷史가 짧고 繼續改正되고 있어 아직 確固한 制度의 基盤을 잡지 못하고 있다.

現段階를 分析해보면 여러가지 不合理한 問題點이 많다. 產災保險의 根本趣旨가 勤勞者 保護와 使用者無過失責任主義를 母胎로 하고 있으나 이에 對하여는 大量의 疑問點이 있다 하겠다. 大事故에 對하여 無條件 企業責任下에서의 補償要求는 企業發展에 沮害될뿐 아니라 使用者無資力으로 因한 補償의 實効性도 없게 될 경우를勘案하여 合理적인 保險制度를樹立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企業主責任이 自己事業場에 局限한 것이고 保險料率도 當該事業場의 事故率統計에 依한 實績主義가 優先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保險料率面에서 보면 勿論 現行法上 實績主義가 規程 되었으나 恒常 現實의 實績과 큰 차이가 있었으며 特히 69年 以後 通用事業場의擴大로 事務職員, サービス系 從事員에 까지 通用시키고 있으나 이는 過去統計上 거의 災害의 危險성이 없는 事業場이며 이와 같이 通用될 때 實績主義를期待하기는 困難할 것이다.

이와 같은 大差의 存在는 오히려 產災保險自



東洋セメント

工業株式會社

總務部長

體를 純粹한 社會保障 制度로 하여 社會保障稅金條로 各 企業主로 하여금 法人稅에 準하여 負課함만 못하다고 하겠다.

둘째, 保險料 算出時 其 策定基礎인 賃金과 產災給與時 支給算定 基礎인 賃金은 當然히 同一해야 할 것이다. 實際에 있어 前者の 境遇에는 最大限 定期給料 外 年間償與金 及 諸手當 厚生費 等 勤勞者에게 惠擇으로 볼 수 있는 諸般 賃金을 包含하여 計算하는 實情임으로 支給請求에 있어서는 그 基礎가 달라 이와 같은 賃金定義에 따른 金額을 認定 받기 困難한 形便이다.

셋째, 災害給與請求時 대단히 節次가 까다로우며 時間이 걸려 때로는 少額의 境遇에는 포기하는 例가 있으며 早期 支給을 為해 其他 距離關係로 經費를 支出하는 例가 많다. 이는 勤勞者保護의 根本目的뿐아니라 企業主에게도 不當한 損害를 보게 하는 것이므로 行政의 簡素化及 關係職員들의 誠意있는 차세가 要求된다.

넷째, 產災補償과 民法上 損害賠償間에 有機的인 關係가 없어 災害發生時 企業主는 災害補償에 恒時 애매한 立場에 處하게 되며 法으로 定한 一定의 補償을 함이 次後 民法上 賠償請求時 거의 無視되다시피하여 二重의 負擔을 지게 됨으로 支給額을 調整하더라도 이와 같은 不合理한 例는 是正 改善點이 要求된다.

다섯째, 先拂하는 概算保險料에 對한 年間 發生利子의 使用方法에 對하여 事後 明細를 公開하여 이를 負擔한 企業과 이 保護의 對象者인 勤勞者에게 細部의인 明細를 수시로 公開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3. 雇傭命令의 問題點 及 提言

援護對象者에 對한 雇傭命令問題는 國家財政이 豐富하다면 이들에 對한 生活保障을 自由資本主義 社會에서 個人企業體에게 까지 強制할 性質이 아니나 現 우리 社會의 與件으로 보아

私企業에 까지 強制하여야 함은 不可避한 實情이고 公私 企業을 莫論하고 이들에 對한 諸般 協助을 最大限으로 함이 我們의 義務일 것이다.

然이나 이를 制度의으로 強制할 境遇 最少限 몇가지 點에 對해서는 問題點을 좀 研究 檢討하여 是正치 않으면 안되겠다.

첫째, 各事業場別 雇傭率의 決定에 있어 關係機關과 業體間의 事前 離밀한 研究檢討下에 合議하여 決定하여야 할 것으로 料되어 一方的인 決定下에 強制함은 各事業場의 實際事情에 따라 더큰 損失이 되는 수가 있으며

둘째, 對象者の 資力에 있어서도 前記와 同一한 方法이 要請되며 如意치 않을 時 事業場에 따라 분위기 調整 國家유공자에 對한 觀念及 制度自體에 對한 理解 及 事故發生等 諸 問題에 있어 더큰 問題가 發生할 여지가 많다.

셋째, 關係機關 行政의 公開乃至 明確化를 相互協助 精神下에서 援護關係 業務가 處理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結語

現下 우리 社會는 近代化 過程에서 各 企業의 發展으로 國家經濟의 發展을 도모하고 한다면 自由民主主義 下에 있어서 人間의 基本權中 一要素인 人間이 人間다운 生存權의 保護를 為하여 經濟的 弱者인 勤勞者를 保護하고 抗日로 부터 反共에 이르는 戰線에서 싸워온 國家 유공자를 保護하는 것이 가장 큰 社會 問題임은 再言을 要치 않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自由主義의 基本權 속에서 調和調整하여 社會 發展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인바 이를 換言하면 現行制度를 신중히 研究 調查하여 逐차적으로 改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이를 為하여는 事實上 가장 利害關係가 깊은 私企業體의 意見을 尊重하여 反映함이 最善策이 될 것이다.